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대학원생 조교 권리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 라인」 안내

1. 관련 : 대학학사제도과-9415(2018. 8.30.) (가칭)대학원생 조교 운영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2. 일부 대학(원)에서 교수-학생 간 수직적·권력적 관계, 폐쇄적인 학계 문화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특히,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 교수의 과도한 업무지시 및 대학의 복무보호 제도 미비 등 대학원생 조교의 열악한 학업, 연구환경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학원생 조교의 복무조건 및 처우수준 등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 및 복무를 명확히 하는 등 대학원생 조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가칭)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5. 각 대학에서 대학원생 조교를 운영함에 있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을 체결하되, 대학의 여건 및 조교의 복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 실정에 맞게 조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주무관	2018/11/28	행정사무관	2018/11/28	대학학사제 도과장	2018/11/28
	윤병우		염선아		문상연

협조자

시행 대학학사제도과-14116 ((2018.11.28.)) 접수 수업지원팀-1643 ((2018.11.29.))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 www.moe.go.kr
전화 044-203-6250 전송 044-203-6485 / ybw1112@korea.kr / 비공개(5)

대학원생 권익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I

추진배경

- 일부 대학원에서 교수·학생 간 수직적·권력적 관계, 폐쇄적인 학문 풍토로 인해 불합리한 관행 지속
- 특히, 대학원생 조교의 ‘학생 근로자’로서의 인식은 보편화되는 반면, 교수의 과도한 업무지시 및 복무보호 제도 미비 등 열악한 복무환경에 노출
 - ※ A대학 교수, 대학원생 4명에게 1년간 8만여장의 논문과 서적을 스캔 지시(’17.1.)
 - ※ B대학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침해(부당 노동행위 및 퇴직금 미지급 등)로 총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17.12.21.)
- 이에, 대학원생 조교의 복무조건 및 처우수준 등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 및 복무 등을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안) 마련
 - ※ “대학원생 권익강화 방안” 정책연구(’17.10.~’18. 4.) 및 대학 등 의견수렴(~’18.9.) 등 실시
 - ※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 괴롭힘 방지 대책(’18. 7.18.) 및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18.10.29.)에 추진과제로 포함

II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및 주요내용

- 적용 범위
 - 석사 혹은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조교에 국한
 -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정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권리를 보호받음

○ 대학원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 제외

※ 학생연구원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 6.29.)”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도개선 등 추진 중(학술진흥과)

□ 주요 내용

○ (서면협약 체결)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 간 복무기간, 복무
장소, 복무내용, 금전적 보상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면협약 체결

※ <붙임>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예시) 참고

○ (관리·감독 책임)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 책임자(실제 운영 부서장 및
운영 교수 등)는 조교의 복무 및 금전적 보상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의 책임

○ (업무범위 제한)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
되지 않은 교원의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 금지

○ (학업·연구권 보장) 대학원생 조교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무 시간 및 업무량 규정

※ 조교 복무시간은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협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교원이나 부서장
등 운영 책임자 등의 사적 업무에 동원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운영 금지 및 대학원생 조교에게 부당 업무 거부권 부여

○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해당 사건 발생 시 고등교육기관
장은 학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 (공정성·투명성 보장)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조교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조교 운영 부서 및 책임자 등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

III

대학별 활용

- 대학원생 조교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조건 및 처우수준, 인권보호 등과 관련, 동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을 체결하되, 대학의 여건 및 조교의 복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토록 권고

IV

행정사항

- 각 대학,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 체결 : '18. 11월~
 - 각 대학, 협약체결 현황 등 제출 : '19. 3월
- ※ 별도 공문 시행 예정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안)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자(이하 '대학원생')가 조교로 복무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을 비롯하여 제반 권리를 보호받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의 대학원생 조교는 석사 혹은 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조교에 국한하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 따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조교는 제외한다. 또한 대학원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도 본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정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권리를 보호받음

3. 주요 내용

1. (협약 체결)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이하 '조교')는 「붙임」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원생 조교 복무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2. (관리·감독) 조교의 운영 책임자(실제 운영 부서장 및 운영 교수 등)는 조교의 복무관리, 장학금·수당의 정확한 지급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상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조교가 복수의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부서별 책임자별로 책임을 맡는다.
3. (업무범위 제한) 조교에게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4. (학업·연구권 보장) 고등교육기관은 조교를 운영 시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무 시간 및 업무량을 정해야 한다.
※ 조교 복무시간은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 하되,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5.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고등교육기관은 조교를 협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교원이나 부서장 등 운영 책임자 등의 사적 업무에 동원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조교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 조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해당 사건 발생 시 고등교육기관장은 학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공정성·투명성 보장) 조교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조교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조교 운영 부서 및 책임자 등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기관의 장 _____(이하 “갑”)과(와) 대학원생 조교 _____(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조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복무기간 및 복무시간 등)

1. 복무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2. 복무장소 :

3. 복무내용 :

- ① (예시1) 본부 행정·사무보조 / ○○학과 학사 및 사무 보조 등
- ② (예시2) 강의자료 준비, 출결확인, 시험감독, 채점 보조 등 강의보조 / 실험·실습·연습반 운영 / 수업진행 등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의 시간	수강 정원
근무내용			
근무시간			

- ③ (예시3)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 / 기숙사 사감 보조 / 학부생 멘토링 등

4. 복무시간 :

- ① (예시1)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 ② (예시2) 주 _____시간 (강의시간 포함, 혹은 별도 지정)

※ “을”의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5. 복무일/휴일 : 매주 _____일(또는 매일단위) 복무, 주휴일 매주 _____요일

※ 강의 보조 또는 수행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 혹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 협의 하에 복무일/휴일 및 복무시간을 별도로 지정

제3조(금전적 보상)

- 지급금액 :

- ① (예시1) 월(일, 시간)급 : 연간 총 원
- ② (예시2) 장학금 : 연간 총 원
- ③ (예시3) 학비감면 : 연간 총 원
- ④ (예시4) 학업장려금 : 연간 총 원
- ⑤ (예시5) 생활지원금 : 연간 총 원

- 지급일 : 매월(매학기, 매분기, 매주 또는 매일) 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 지급(), “을” 명의 예금통장 입금()

※ 중단·해지 시 중단·해지일까지 복무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제4조(안전·보건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인권·권리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을”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위반시 처벌·제재) 본 협약서의 복무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갑”은 인권센터 등 관계 부서의 직권 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7조(협약 중단·해지) “을”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복무협약서 교부) “갑”은 복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복무협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갑”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운영 책임자에게 교부하며, 운영 책임자가 협약 내용에 따라 “을”의 복무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0 . .

(갑) 복무기관 : (전화번호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운영책임자 :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 대학의 여건 및 조교의 복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협약서(예시) 조정 활용